

##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

소관부서 : 감사법무담당관

제정 2025 · 11 · 7 조례 제2296호

**제1조(「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”를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”로 한다.

**제2조(「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법제업무 운영 규정」 제20조제2항”을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을”을 “「이천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」 제5조를”로 한다.

**제3조(「이천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를 “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”으로 한다.

**제4조(「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를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”로 한다.

**제5조(「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근로복지사업 운영 규정」 제2조제13호”를 “「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」 제2조제13호”로 한다.

##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

제5조제2항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**제6조(「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하고, 제35조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”로 한다.

**제7조(「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**제8조(「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**제9조(「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0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**제10조(「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”를 “이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,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”를 ““성별영향평가””로, “분석·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(이하 “분석평가”라 한다)”를 “성별영향평가(이하

“평가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분석평가 대상”을 “평가 대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성별영 향분석평가법」”을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”으로 하며,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분석평가의 고려사항”을 “평가의 고려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, “분석평가서”를 “평가서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분석평가의 시기”를 “평가의 시기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분석평가서의 작성”을 “평가서의 작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분석평가서”를 “평가서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분석평가결과의 반영”을 “평가결과의 반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”를 “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각각 “평가”로, “분석평가책임관”을 “성별영향 평가책임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분석평가책임관”을 “성별영향평가책임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분석평가 교육”을 “평가 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각각 “평가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”을 “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, “이천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”를 “이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분석평가”를 각각 “평가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제2호나목 중 “분석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**제11조(「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「성 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”를 “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5조”로, “분석·평가”를 “평가”로

한다.

제9조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**제12조(「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, “분석·평가”를 “평가”로 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성별영향분석평가”를 “성별영향평가”로 한다.

**제13조(「이천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이천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이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이천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”를 “이천시 가족센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이천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”를 “이천시 가족센터”로 한다.

**제14조(「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**제15조(「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**제16조(「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**제17조(「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7호마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

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5조”를 “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장”을 “수도과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(「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0조(「이천시 경관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영 제5조제2항”을 “영 제5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8호 중 “6세 미만”을 “7세 이하”로 한다.

제22조(「이천시 환경기본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「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3조(「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6호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4조(「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마목 중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5·18민주

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

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”으로 한다.

**제25조(「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중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으로 한다.

**제26조(「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바목5) 중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**제27조(「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**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6호 중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”을“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